근로소득자 스마트폰 신고

(공제 추가 및 수정)

1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내려 받기

- **근로소득 신고자를 위한 스마트폰 종합소득세 전자신고**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.
- 스마트폰을 통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.
-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또는 구글 Play 스토어 마켓에서 **국세청** 모바일을 검색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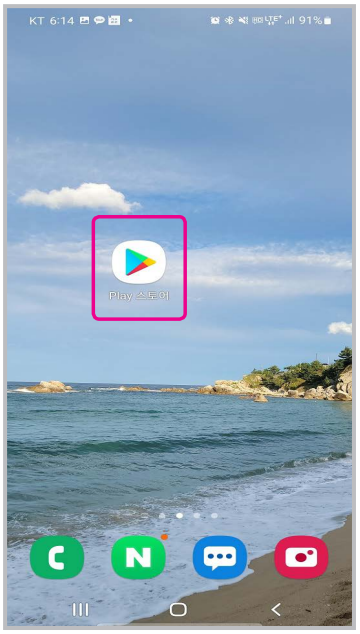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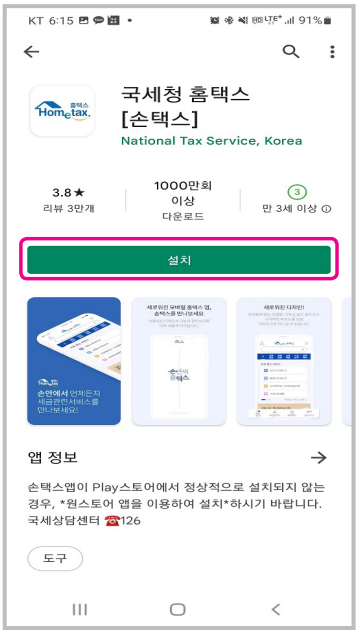

- 검색된 「**국세청 홈택스**」 모바일 통합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합니다.

2 로그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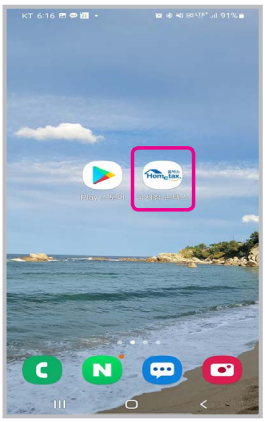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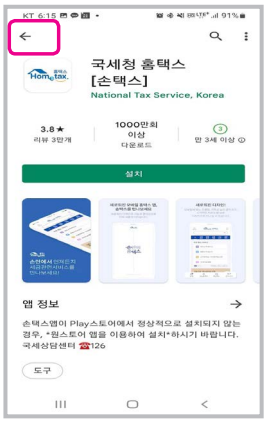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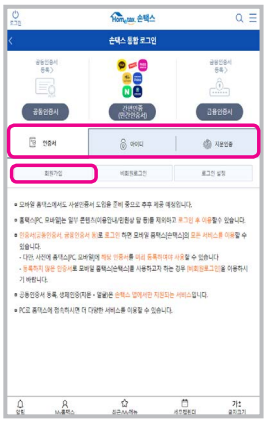

- 내려 받은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 접속하여 메뉴화면 상단에 [로그인] 버튼을 누릅니다.
- 신고서 작성 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공동 · 간편 · 금융인증서 인증 또는 지문인증으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가입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[회원가입] 버튼을 누른 후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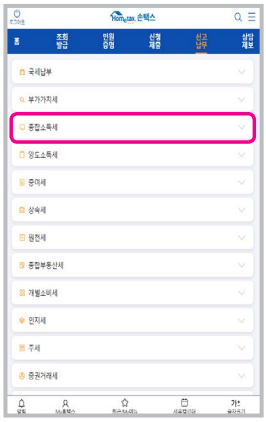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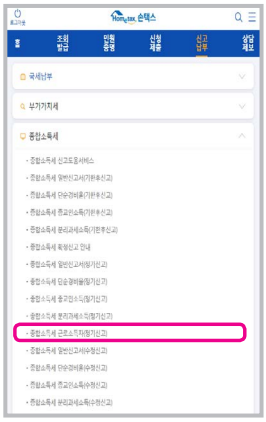

- 손택스에서 화면 상단의 [신고납부]를 누릅니다.
- 다음 화면에서 [종합소득세]를 누른 후에 **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(정기신고)**를 선택합니다.
- 스마트폰 전자신고 시 제공된 신고내용 중 총급여액이 다르거나, 주택자금공제, 기부금공제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여야 합니다.

3 전자신고서 작성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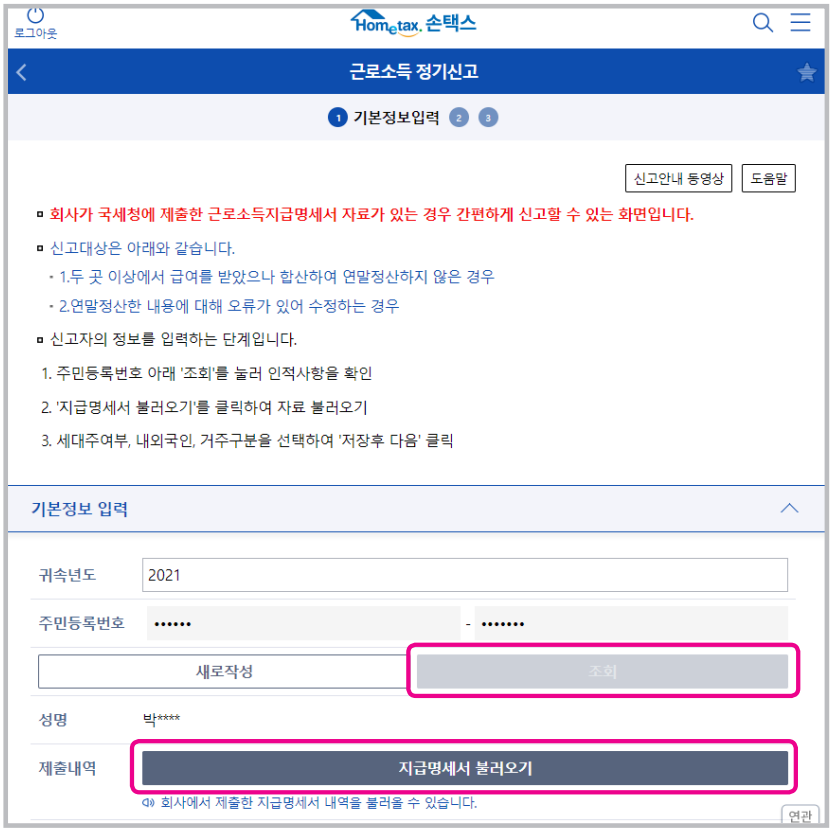

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.

- 주민등록번호 아래 **[조회]** 버튼을 누르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됩니다.
- 성명 아래 제출내역 항목에 **[지급명세서 불러오기]**를 누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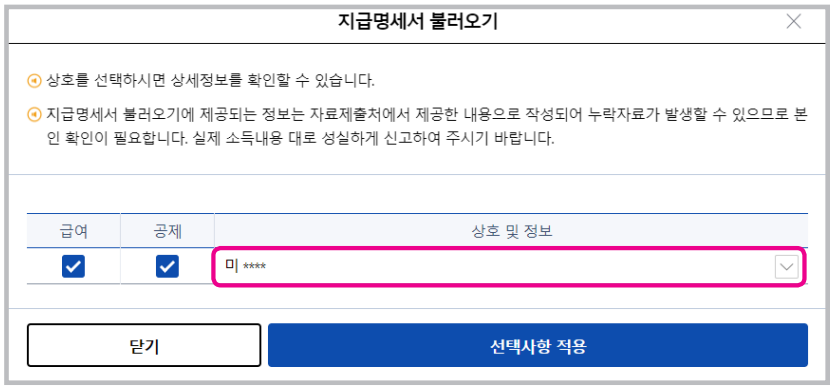

- 자료제출처에서 제공한 근무처별 소득명세 자료가 보여지며, 상호를 선택하면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- 급여, 공제란을 체크하고 **[선택사항 적용]** 버튼을 누릅니다.

- 조회된 기본정보 내용을 확인한 후 [저장 후 다음] 버튼을 누릅니다.
- 근무지별 소득명세의 급여합계가 총급여항목에 합산되어 보여지며, 근로소득공제,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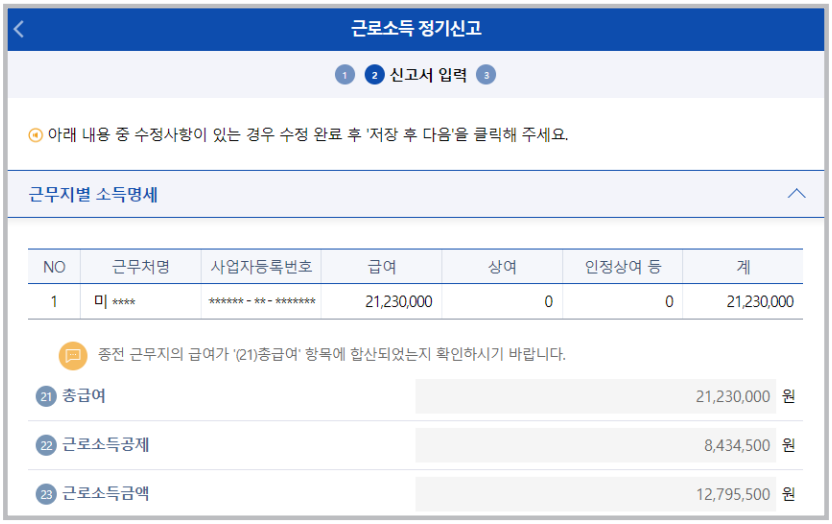

- 아래에 소득공제 내역 중 인적공제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.
- 인적공제명세 목록에서 새로 인적공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경우 [입력/수정하기] 버튼을 누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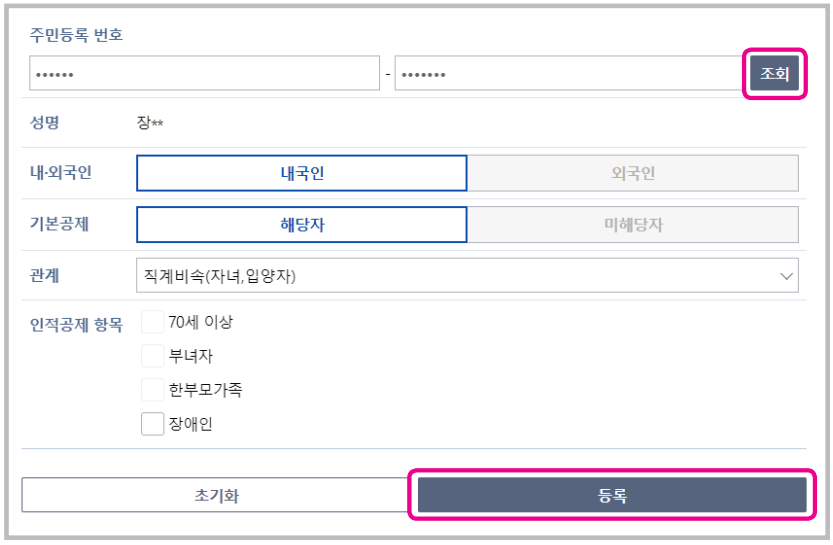

- 인적공제 입력창이 나타나며, 새로 입력할 인적공제를 받고자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[조회] 버튼을 누릅니다.
- 관계, 인적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[등록] 버튼을 누릅니다.

- 인적공제 대상자명세에서 인적공제자를 선택 후 [수정/삭제] 버튼을 누르면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목록에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.
- [입력완료] 버튼을 누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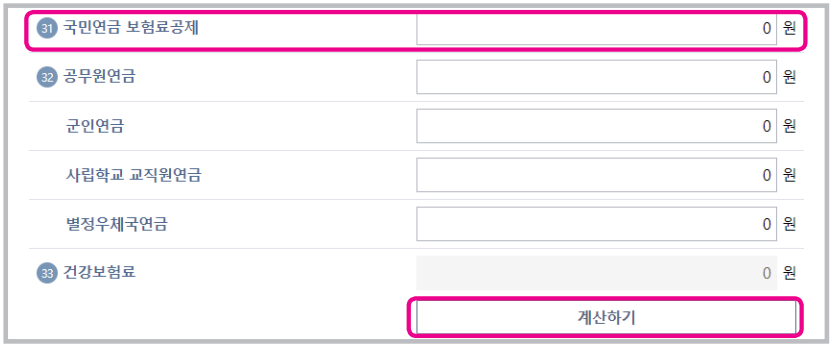

입력한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확인 후 아래로 내리면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명세가 나타납니다.

- 국민연금 보험료의 연간 납입금액 및 각 항목별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.
- [계산하기] 버튼이 있는 항목들은 해당 버튼을 눌러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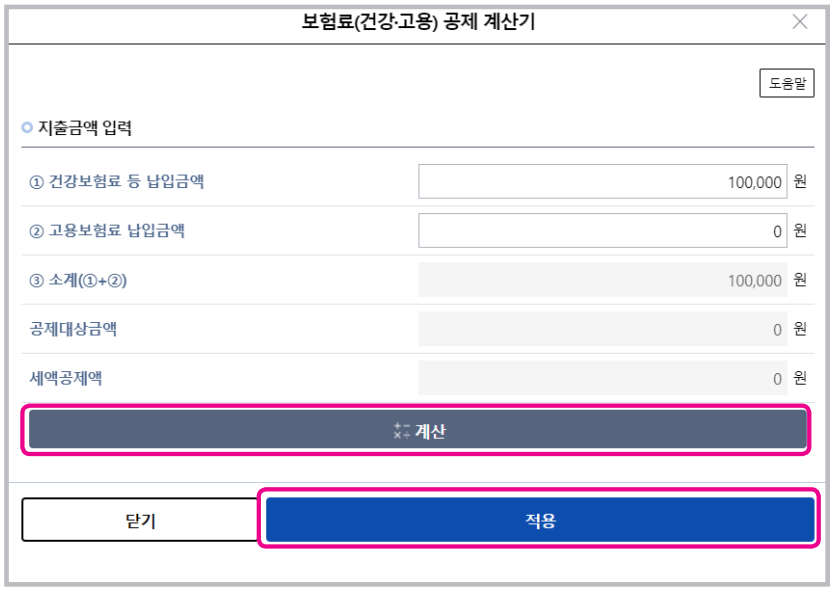

- 계산하기 버튼을 누른 후 팝업창이 뜨면 납입금액 등을 입력하고 [계산] 버튼을 눌러 세액공제액을 확인합니다.
- [적용] 버튼을 누르고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면 입력한 내용이 보여집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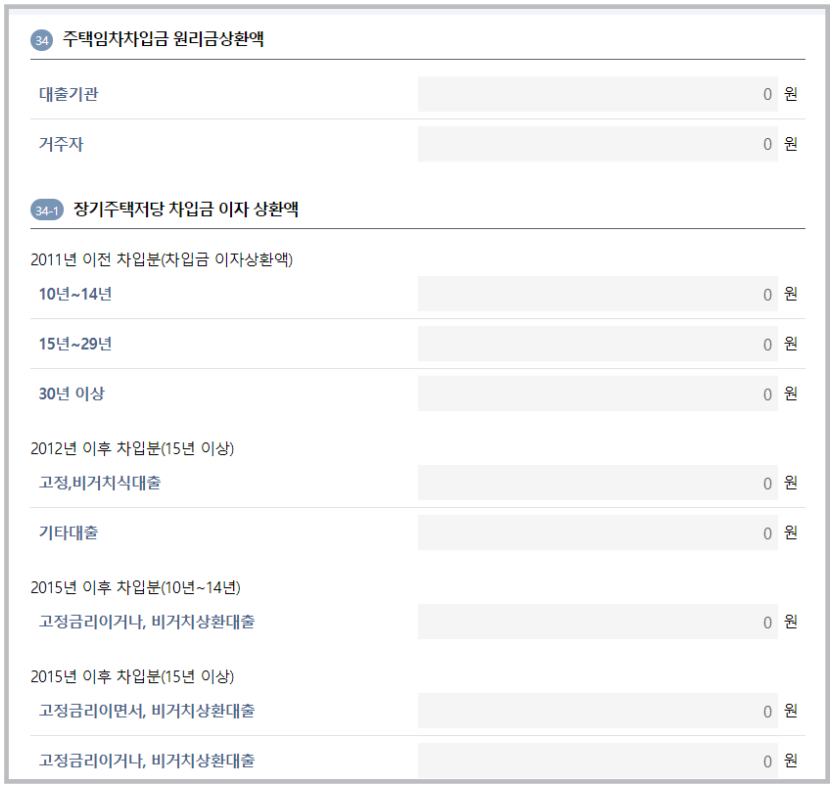

그 밖의 대출	0 원
35 기부금(이월분)	0 원
36 특별소득공제 계 (33+ ~ +35)	100,000 원
37 차감소득금액	9,195,500 원

그 밖의 소득공제

38 개인연금저축	0 원 2000.12.31. 이전가입
3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	0 원
40 **주택마련저축 합계**	0 원
청약저축	0 원
주택청약종합저축	0 원
근로자주택마련저축	0 원
41 투자조합 출자 등	0 원 계산하기
42 신용카드 등 사용액	0 원 계산하기
4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	0 원
우리사주조합 기부금 ('14'년귀속까지 해당)	0 원
44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	0 원
45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	0 원
46 그 밖의 소득공제 계	0 원

과세표준 및 산출세액

4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	0 원
48 종합소득 과세표준	9,195,500 원
49 산출세액	551,730 원

아래로 내리면, 차감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.

- 다시 아래로 내려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하고, 투자조합 출자,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[계산하기] 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.
- 팝업창이 뜨면 사용금액을 입력하고 [계산] 버튼을 누른 후 [적용] 버튼을 누릅니다.
- 아래에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.

- 다음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.
-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등 항목별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.

60 ISA만기 시 연금 계좌납입액

공제대상금액	0 원
금액	0 원

61 보장성보험료 합계 [계산하기]

공제대상금액	0 원
금액	0 원

61-1 일반 보장성

공제대상금액	0 원
금액	0 원

61-2 장애인 전용 보장성

공제대상금액	0 원
금액	0 원

62 의료비 [계산하기]

공제대상금액	0 원
금액	0 원

63 교육비 [계산하기]

공제대상금액	0 원
금액	0 원

64 기부금 합계 0 원

64-1 정치자금 기부금(10만원이하)

공제대상금액	0 원
금액	0 원

64-2 정치자금 기부금(10만원초과)

공제대상금액	0 원
금액	0 원

64-3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

공제대상금액	0 원
금액	0 원

64-4 우리사주조합기부금

공제대상금액	0 원
금액	0 원

다음은 세액공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.

-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지며, 해당있는 항목에 입력합니다.
- 연금계좌,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 등은 항목별 해당 내용을 [계산하기] 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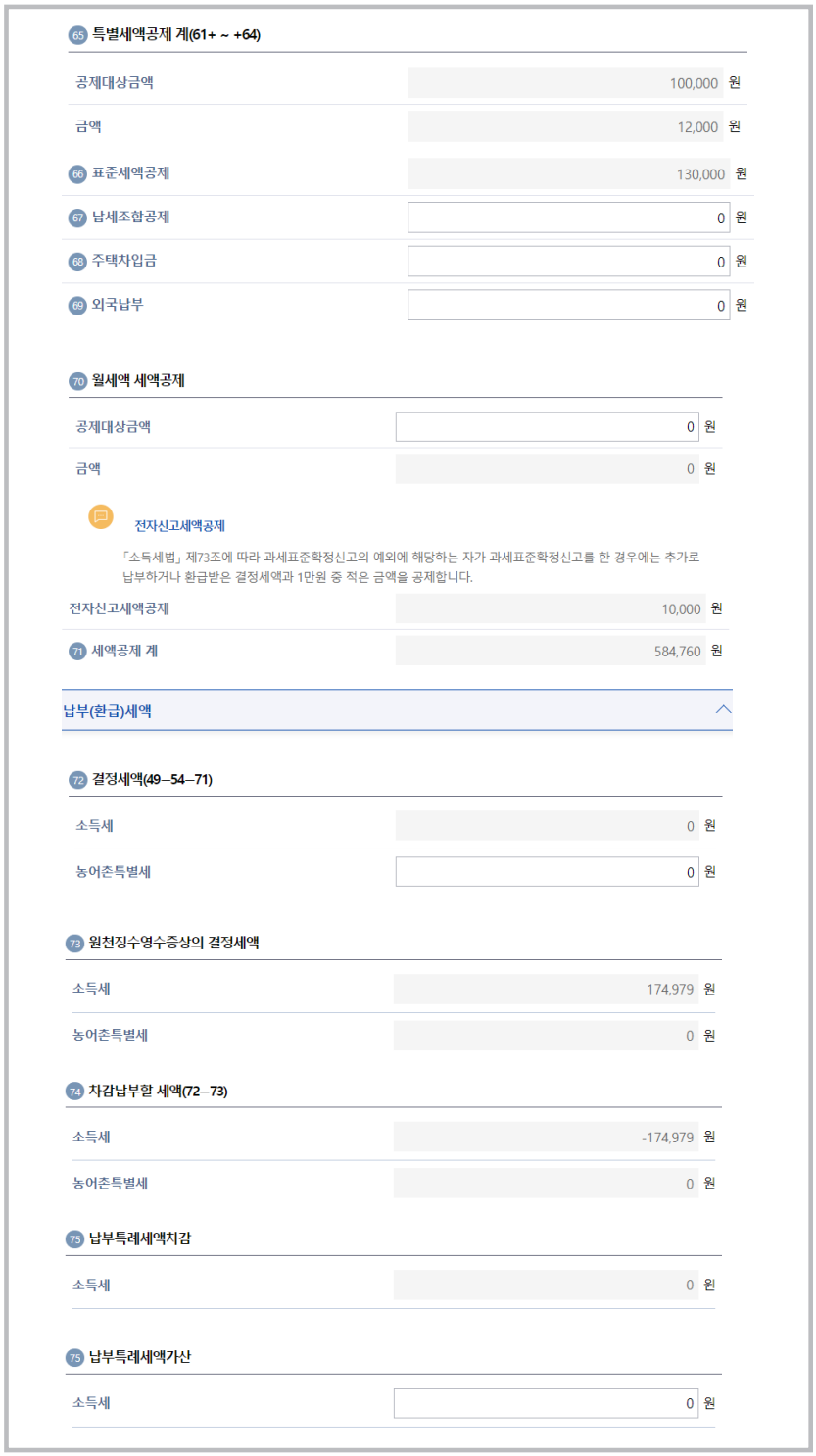

-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결정세액,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, 차감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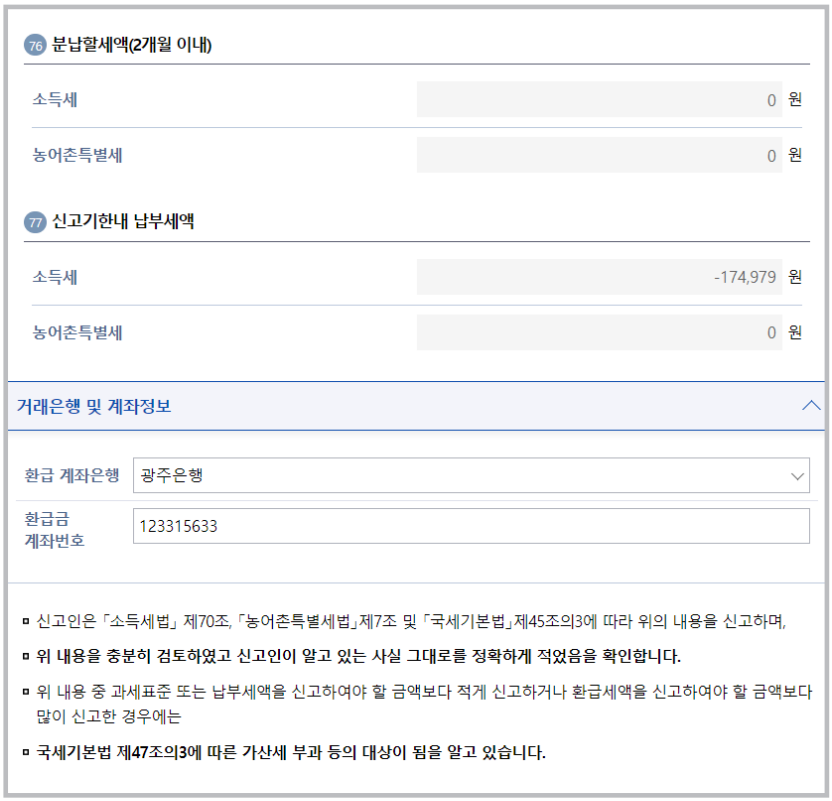

-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거래은행 및 계좌정보 화면에 본인 명의 계좌의 금융회사명을 선택하고,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.
-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계좌은행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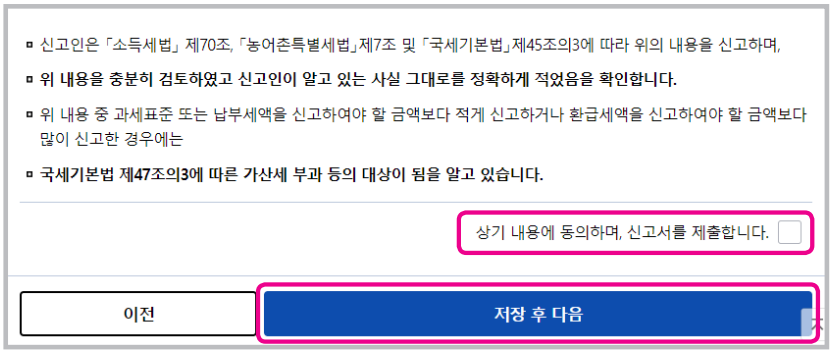

- 화면을 아래로 내려 입력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**"상기 내용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"**에 체크합니다.
-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화면 아래에 **[저장 후 다음]** 버튼을 누릅니다.

신고서 내용 요약

기본정보

소득자	박***(******-*******)
귀속년도	2021
신고유형	정기신고(40,비사업자)
종합소득금액	12,795,500원

과세표준

종합소득세	8,668,500 원
농어촌특별세	0 원

산출세액

종합소득세	520,110 원
농어촌특별세	0 원

납부(환급)할 총 세액

종합소득세	-174,979 원
농어촌특별세	0 원

도움

납부특례세액

차감 종합소득세	0 원
가산 종합소득세	0 원

분납할 세액(2개월 이내)

종합소득세	0 원
농어촌특별세	0 원

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

종합소득세	-174,979 원
농어촌특별세	0 원

환급계좌정보

금융회사	광주은행
계좌번호	12********

근로소득 정기신고 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납니다.

-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, [개인정보 제공동의]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의 [신고서 제출] 버튼을 누릅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, [개인정보 제공]에 동의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
-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,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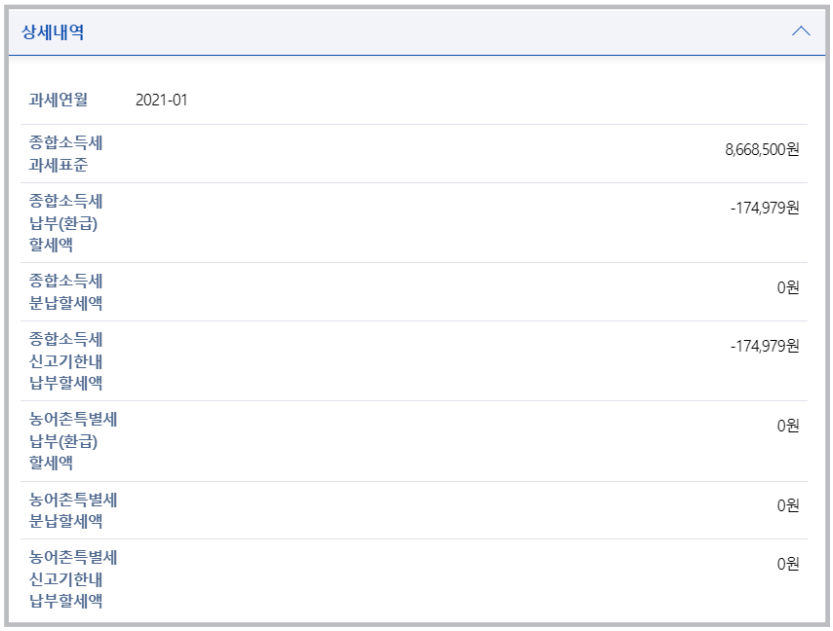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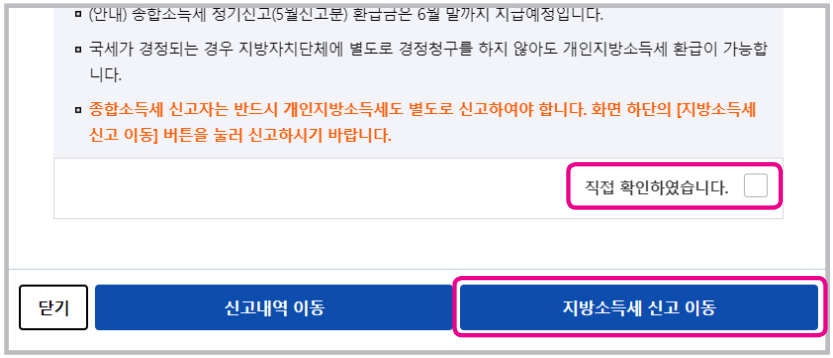

-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까지 인터넷뱅킹의 국세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,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하단에 [상세내역]을 확인하시고 [직접 확인하였습니다]를 체크한 후에, [신고내역]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, 납부서, 제출된 신고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[지방소득세 신고이동]을 눌러 스마트위택스(모바일)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, 위택스, 스마트위택스(모바일)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서가 제출된 후 신고기한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미 제출한 신고서 접수증 및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,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